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13

발의연월일: 2020. 6. 24.

발 의 자 : 윤두현 · 윤주경 · 양금희

윤재옥・金炳旭・송언석

정희용 · 구자근 · 권명호

김예지 · 류성걸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보험의 목적물의 선정과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각각 두고 있음.

그런데 보험가입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험약관이나 보험료 등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안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심의회의 위원은 농어업재해보험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농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있을 뿐,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의대표성이 있는 사람은 빠져있어 농업인, 임업인, 축산인과 어업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심의회의 안건 대상과 위원에 보험약관·보험료 등에 관한 사항과 농업인, 임업인, 축산인 및 어업인의 단체대표를 추가하여 보험가

입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및 같은 조 제4항제4호·제5호 신설).

법률 제 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8조제3항제1호의 서류에 관한 사항

- 4.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농업인단체의 대표, 임업인단체의 대표 및 축산인단체의 대표
- 5. 어업재해보험심의회: 어업인단체의 대표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심의회) ① 이 법에 따른	제3조(심의회) ①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	
험"이라 한다) 및 농어업재해	
재보험(이하 "재보험"이라 한	
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재해	
보험심의회를 두고,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으로 어업재해보험심	
의회를 둔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2의2. 제8조제3항제1호의 서류
	에 관한 사항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4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 중에서 각각 농림축산식품	
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농업인
	단체의 대표, 임업인단체의
	대표 및 축산인단체의 대표
<u><신 설></u>	5. 어업재해보험심의회: 어업인
	단체의 대표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